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48<sup>th</sup> August 2012

- ▶ WHERE IS GRACE CHANG?:  
THE POWER OF BRAND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우리회사의 관세환급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뜰하게 돌려받기  
..... 3
- ▶ FTA NEWS:  
FTA와 농산품, 위기만은 아니다!  
..... 4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해관의 전면적인 분류통관 실시현황  
..... 5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6
- ▶ CUSTOMS PRECEDENT ㉸  
..... 7

## SHINHAN NEWS

‘축’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2. 08. 01)

‘축’

관세청 주관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및 수상  
(2012. 08. 29)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The Power of Brand



장승희  
대표 관세사

최근 영국의 브랜드 컨설팅회사에서 세계 500 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결과 삼성이 6 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 위인 애플의 706 억 달러에 비교하면 382 억 달러로 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의 18 위에서 12 단계를 뛰어 오르는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GE, 코카콜라 및 일본의 토요타 보다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다.

브랜드란 "이름, 용어, 표식, 상징, 디자인 또는 이것들의 조합으로서 판매자의 재화와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경쟁자들로부터 그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의 힘은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 그 가치가 올라갈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즉, 차별화된 높은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고객들에게 제공하면 그 브랜드에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신한관세법인은 1965 년부터 47 년간 꾸준히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 년에는 컨설팅본부를 설립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최고의 FT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신한 노력의 인정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신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갔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FTA 뿐 아니라 AEO, 환급 등의 컨설팅 서비스와 통관 서비스에 있어서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한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객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의 힘 입니다.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우리회사의 관세환급  
알뜰하게 돌려받기



김혜정 관세사  
([kimhj@customsservice.co.kr](mailto:kimhj@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FTA News-**  
FTA 와 농산품  
위기만은 아니다!



고대웅 관세사  
([duko@customsservice.co.kr](mailto:duk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해관의 전면적인  
분류통관 실시 현황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청 심사정책국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부산국제우편세관장  
- 前)북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한국무역협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경기 북서부 전담 관세사

**Customs Precedent** ㉞  
타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여부



강승주 관세사  
([sjkang@customsservice.co.kr](mailto:sjka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前) LG 전자(주)  
  HE 본부 관세그룹

Cover Story

# 우리회사의 관세환급,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뜰하게 돌려받기

20 여년간 국내에서 자재를 조달받아 호이스트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N사는 수입하는 원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인의 도움을 받아 약 2 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또한 원재료를 수입해 전자제품 등을 생산, 수출하는 중견 전자업체 D사는 최근 관세 환급 방법을 변경해 월평균 2 억여 원에 그쳤던 환급액을 3 억 6000 만원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관세환급제도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번 호에서는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환급 특례법상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부과, 징수하고 동 수입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제조, 가공 등)에 사용된 소요원재료의 수입하는 때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제조사)에게 되돌려 주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출지원책 중의 하나로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 II. 환급의 요건

### 1.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②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③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용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
- ④ 대체사용 원재료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해지는 국산 원재료도 수입원재료와 동일하게 보아 관세 등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2. 환급대상 수출이어야 합니다.

-환특법상 규정된 "수출 등"은 일반 유상수출 및 수탁, 위탁가공수출물품, 외항선, 원양어선 공급물품 등의 무상수출을 포함하며 주한미군에 판매하는 물품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환급적용 비대상 수출입니다.

- ① 중계무역 수출
- ② 현지인도 수출

### ③중고품의 수출

### ④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의 수출

### 3.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수출이어야 합니다.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 년입니다. 따라서 수출이행기간 계산의 기산일을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 III. 개별환급

### 1. 의의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관세납부분)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만큼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2. 추천 업체

수출물량이 많고, 수입관세를 납부가 많은 업체

### 3. 필요서류

#### 1) 환급신청서

- ① 환급금계좌개설신고
- ② 요량산정방법신고(공정도 포함)

#### 2) 환급신청서

- ① 수입신고필증
- ② 수출신고필증
- ③ 소요량증명서
- ④ 분할환급용 기록표

## IV. 간이정액환급

### 1. 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 품목별로 수출금액당(FOB 10,000 원) 환급액을 정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2. 신청요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 제조업체
- ② 환급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2 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 억원 이하인 업체
- ③ 당해 수출물품의 세번번호가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등재되어 있을 것.

## 3. 추천 업체

- ①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개별환급의 경우 환급받을 관세와 간이정액환급시 환급받을 관세의 차가 크지 않은 경우
- ② 국내산 원재료가 수출완제품 공정에 다량 투입된 경우

## 4. 필요서류

- ① 간이정액환급신청서
- ② 수출신고필증
- ③ 환급금계좌개설신청서

☞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 V. 납부한 관세가 없어도 수출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사실 증명서류만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 제조업체로서 환급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2 년간 환급실적이 6 억원 이하인 업체의 경우,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제조 가공하여, 생산 물품을 수출에 공할 경우라도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출금액이 1,000 만원 (FOB 금액) 이고,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액이 150 원 이라면, 해당업체에서는 납부된 관세 없이도 15 만원의 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관세 환급 제도, 우리 회사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보세요.*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혜정

[kimhj@customsservice.co.kr](mailto:kimhj@customsservice.co.kr)

# FTA 와 농산품, 위기만은 아니다!

FTA 확대에 있어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역시 농산품에 대한 것이다. 농림수산물부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수산물 가운데 칠레-미국-EU 등 FTA 체결국에서 수입한 농수산물의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농산품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우려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농민신문에서 실시한 농업인 대상의 FTA 관련 설문조사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해 약 50%가 한국농업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최근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FTA가 농산품에 미치는 영향이 위기만이 아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기에 이를 소개하고 또한 정부의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 • FTA 체결 이후 농산품 수출의 확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보고서 '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 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아세안, EU, 미국에 농산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절감 또는 철폐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농산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아세안 수출은 27.7% 늘었으며, EU에 대한 농산품 수출도 지난해 7월 발효 이후 확대되어 발효 직전 1년과 이후 1년을 비교하면 수출은 7460만 달러에서 8770만 달러로 17.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對EU 농산품 수출 비교	(단위:달러)
FTA발효 전(2010.7~2011.6)	7460만
FTA발효 후(2011.7~2012.6)	8770만

자료: 한국무역협회



출처 : 농민신문

이 보고서는 FTA에 따른 관세 절감을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이 가능해져 농산품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물론 중국과의 FTA는 다른 FTA와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0개 주요 농산물 중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은 모두 한국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뿐 아니라 지적적 요건 등을 고려하면 FTA 체결 후 중국으로부터의 농산품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다.

### • FTA 이행지원금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수산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인 피해보전제도로써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가 있다.

#### 1) 피해보전직불제도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당해 연도 품목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의 90%를 보전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사업비 60,000 백만원)

#### 2) 폐업지원제도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 (사업비 30,000 백만원)

이외에도 비과세부업소득 범위 확대,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등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수산물부: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http://www.at.or.kr)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고대웅

[duko@customsservice.co.kr](mailto:duko@customsservice.co.kr)

# 중국해관의 전면적인 분류통관 실시현황

지속적으로 통관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국해관은 전면적인 분류통관을 실시 하였으며, 일부 해관에서는 무 서류 통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열악한 통관환경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국해관이 시행하고 있는 분류통관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해관은 2009년부터 기업분류 통관개혁을 추진하여왔다. 과학적인 위험 관리와 기업의 법규 준수도를 기초로 기업의 유형, 상품의 HS, 가격, 원산지, 감관증명서, 무역상대국, 항로, 물류 정보, 등의 각종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기업들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분류통관을 실시한 것이다.

분류통관이란, 저 위험화물에 대해서는 전산자동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통관을 실시하는 반면, 고 위험화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심사 및 검사를 통하여 검사비용을 높이고 집중적인 감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분류통관 개혁은 통관소요시간의 대폭적인 단축, 기업 물류비용의 절감, 항만 통관효율의 대폭 향상을 가져와 법규준수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2011년, 신용등급이 B 등급의 "고위험 중점심사" 수출입신고서의 비율이 19.1%인 반면, 고신용·저위험 AA 등급의 기업은 "고위험 중점심사" 수출입신고서의 비율이 5.5%에 그쳤고, 분류통관의 수출통관 소요시간은 1.5시간으로 개혁 전과 비교하여 0.42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17.9시간으로 15.2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해관총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3.31%의 기업이 분류통관의 개혁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였으며, 82.99%의 기업은 통관비용에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효과에 대하여 만족감을 나타냈고, 87.21%의 기업이 전체적으로 통관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음을 밝혔다. 분류통관의 개혁은 효율적인 업무흐름을

통하여 현장직원이 처리해야 할 일평균 신고서 건수를 대폭 감소시키고 동시에 개혁을 통한 잉여 인력자원을 고위험 화물의 심사, 감관, 사후관리에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가져왔다. 분류통관의 개혁은 수출부터 우선 시작하여 수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해관은 전면적으로 분류통관을 시행하여 모든 기업들이 분류통관의 편의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해관은 전면적인 분류통관 실시에 이어 8월 1일부터 일부해관에서 무 서류 통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업이 수출입 화물의 신고에서부터 반출까지, 모든 통관과정에서 종전의 일반서류 위주에서 전자서류 위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서, 송품장 같은 근거서류를 인쇄할 필요 없이 기업이 전자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세관에 전송함으로써 기업의 직접제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세관심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관은 보세구역과 기업에 통관완료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기업은 보세구역에서 직접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해관업무현장과 보세구역을 오가는 인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중국해관의 통관환경과 전산화 또는 정보화는 아직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해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디나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통하여 미비점이나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完비한 후에 비로소 정식 시행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아무튼 중국해관은 현재 많은 부분에서 글로벌 표준을 채택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세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수록 통관수요가 늘어나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하루빨리 우리 기업들의 중국통관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애로사항이 줄어들게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국종망 서비스 이용 승인신청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단순화,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내용

-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신청토록 하고,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제출하는 절차 생략
- 2) 중계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오류검증 역량 인증제 폐지  
오류검증 수행을 위한 관세청장 업무수행규칙 및 검증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세청장 인증,

검증조직 및 인력구비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 확인 규정 삭제

3) 법적근거가 미비한 조항 정비

- 국종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기준 중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삭제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등을 하고,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것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3. 시행시기

2012년 7월 1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해 급증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에 대응

2. 개정내용

- 1) 결과통지 시 인터넷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우편방식으로 인한 시간적, 인적 부담 해소
- 2) 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 등
- ① 품목분류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15일→30일)  
※ FTA 특례법상 원산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90일로 규정

- ② 품목분류 사례 등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산입 제외대상에서 삭제
- 3) 사전심사 결과 “고시”가 인터넷을 통한 대외 “공개”를 의미함을 명확화
- 4) 사전심사 결과의 공개 유도
- ①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건 외에는 모두 공개 원칙  
- 비공개요청시에도 결정사항은 영업비밀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② 사전심사 신청서에 비공개시 불이익\*을 명시하고, 비공개의 사유와 내용 제시 요구

\* 사전심사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됨

3. 시행시기

2012년 8월 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 대상물품 재지정

-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 운영되던 4개 물품\*이 '12.7.30 일로 지정기간 만료  
\* 비식용 천일염, 비식용 대두유, 금밀복, 안경테
- 2) 동 물품에 대한 중국내 불법유통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지정 필요

2. 개정내용

- 1) 지정기간 만료 대상 4개 품목 지정기간 재지정

- ① (기존) 4개 품목 지정기간  
2009.8.1 ~ 2012.7.30
- ② (개정) 4개 품목 지정기간  
- 비식용 천일염 지정기간  
2012.7.31 ~ 2015.7.31  
- 비식용 대두유 지정기간  
2012.7.31 ~ 2015.7.31  
- 금밀복(냉동복어) 지정기간  
2012.7.31 ~ 2015.7.31  
- 안경테 지정기간  
2012.7.31 ~ 2014.2.28

3. 시행시기

2012년 7월 31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㉞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 타(他)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8 관 0033 1999.02.18)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스터디하였다. 각 판례들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정정식 관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신는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하는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권리사용료(로열티)의 경우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본 결정 사례에서는 수입자 외의 타 법인이 수출자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열티)의 가산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 □ 사건개요(Facts)

### 1. 처분내용

- 수입자 A 법인(청구법인)은 유럽의 B(수출자)로부터 초코킷(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의 초코드링크를 생산하는 C 법인(청구 외 법인)에 공급함
- 초코드링크를 생산하는 C 법인은 유럽의 수출자 B 의 본사와 기술제휴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드링크를 생산하면서 순매출액의 4%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수입자 A 법인은 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C 법인이 B 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수입자(청구법인)의 주장

- 수입한 쟁점물품인 초코킷은 B 사와 C 법인의 계약제품인 초코드링크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것임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되어 이 건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조건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드링크믹스를 역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여러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체들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C 법인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초코드링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받기

때문이지 결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에 가산요건인 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이 건 과세는 부당함

### 3. 처분청의 주장

- 이 건의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 쟁점물품은 계약제품(초코드링크)의 전용 원료이고 다국적기업으로서 기술제공자인 B 사가 직접 제조 가공한 핵심원료(또는 반제품)가 공급되고 있고, B 사의 계약제품의 특허,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 및 상표권 허여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C 법인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 C 법인은 B 사가 직접 제조 공급하는 핵심 원료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계약제품의 전용원료인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거래는 다국적기업인 B 사가 지사 등을 통하여 독점적 권리 제품생산 등 실질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거래형태로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반제품 상태인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됨.

## □ 쟁점(Issue)

국내의 타 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열티)를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 근거

#### 1) 관세법

제 30 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략)

②~⑤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 19 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생략)

② 법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⑥ (생략)

**2. 쟁점 검토**

**1) 당해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쟁점물품은 B 사와 C 법인의 계약제품인 XX 드링크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여 이 건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짐(청구법인도 관련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

**2)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B 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C 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정(Holding)**

위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 검토의견**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인바,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여 기술 등 노하우가 체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권리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다툼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거래조건의 성립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 동안 과세사례 또는 판례를 보면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거래조건은 통상적으로 구매자가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였다. 즉, 구매선택권이 없으면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 건은 권리 사용료를 수입자가 아닌 국내의 또 다른 제조자(C 법인)가 지급하였음에도 거래조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어떤 논리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 사례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강 승 주

[sikang@customsservice.co.kr](mailto:sikang@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